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7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의자 : 서영석 · 소병훈 · 서미화

이수진 · 김남희 · 남인순

전진숙 · 박지원 · 최혁진

김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 · 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 · 조정을 거쳐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 ·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 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 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계 · 연구기관 · 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화장품 안전 · 품질 분과위원회

2. 화장품 산업 육성 분과위원회

3. 화장품 수출 지원 분과위원회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i)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p>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 · 조정을 거쳐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p> <p>2. 화장품 안전 · 품질 관리, 경쟁</p>

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
력 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
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품질 관
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
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
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협의·조
정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 업무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 경쟁력강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차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과 관련하여 학계·연구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화장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협의회에 간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화장품 안전·품질 분과위원

회

2. 화장품 산업 육성 분과위원회

3. 화장품 수출 지원 분과위원회

⑦ 협의회와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